

# 대법원 2023도18091 강도살인등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연구관실(02-3480-1895)

대법원 2부(주심 대법관 이동원)는,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을 하는 점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한 후 전자장치를 자르고 도주하여 강도살인,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, **피고인의 상고를 기각**하여,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**원심판결(무기징역형 등)을 확정**함(대법원 2024. 2. 15. 선고 2023도18091 판결)

## 1. 사안의 개요

### 가. 공소사실의 요지

#### ▣ 강도살인

-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23. 2. 8. 과도와 투명테이프를 가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소재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유인 후 편의점 내부 창고 안으로 끌고 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음

#### ▣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

- 피고인은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후 전자장치를 자르고 도주하였음

### 나. 소송경과

#### ▣ 제1심: 전부 유죄

- 무기징역, 부착명령 20년

▣ 원심: 항소기각

● 유죄 판단 이유의 요지

- 피고인이 과도를 미리 준비하였고,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2차례 가격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됨
- 강도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형이 부당하지 않음

## 2. 대법원의 판단

### 가. 쟁점

- ▣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
- ▣ 무기징역형이 부당한지 여부

### 나. 판결 결과

- ▣ 상고 기각(원심 수긍)

### 다. 판단 내용

- ▣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
- ▣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